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7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5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도시계획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(2025. 10. 15.)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도시환경국장 최원석)

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도모하고, 서면심의 방식 및 위원의 결원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5조)

나.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규정 (안 제6조의2)

다. 서면심의 규정 신설(안 제8조)

라. 기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정비

(안 제6조, 제6조의2·4·5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
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가족정책과, 감사담당관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설치·운영됨.

○ 기금의 활용

- 기존에는 공금예금에 장기 예치한 이력이 있으나, 옥외광고발전기금

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확인하였음.

○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
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기존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. 이에 대해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. 12. 31.까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함.¹⁾

나. 검토 내용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
- 안 제5조에 기재된 기존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인데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해 그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.

<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>

- 심의안건: 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
- 심의방법: 서면심의
- 심의일시: 2025. 9. 16. (화)
- 심의결과: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. 12. 31.로 한다.

<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>

- 심의안건: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(안)
- 심의방법: 서면심의
- 심의일시: 2025. 9. 29. ~ 10. 1.
- 심의결과: 2026년도말 기준 총 조성규모를 13억 7,096만원으로 한다.

1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○ 서면심의 규정 신설

- 안 제8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상 심의방식은 대면심을 통해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심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임.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<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·투명성 제고>를 위해서 심의방식은 대면심의가 원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,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을 할 수 있음. 이에 따르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요 심의는 대면심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.
- 심의방식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는 조문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. 다만, 개정조례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모두 ‘서면심의’였다는 점에서 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’에 해당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

- 안 제6조, 제6조의2, 제6조의4, 제6조의5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는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조문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.
- 다만,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은 ‘심의’에 있고, 안 제6조의 위원회 설치 목적도 ‘심의’에 있으므로, 안 제6조제4호의 용어는 ‘구청장이 **심의**에 부치는 사항’으로 정정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보임.
- 회의는 단순히 모이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데, 이에 비하여 심의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임.

< 규정 비교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.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3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제6조(위원회의 설치)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_____ _____ 심의 _____

다. 종합 의견

○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절차 정비

- 이번 개정은 ①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방식 원칙을 명시하고, ②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함이 그 목적임.



- 다만,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상반기에 제출되지 않아 전체 일정이 지연되어 절차상 미비점이 발생하였다고 보임.

○ 향후 과제

-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금운용현황을 토대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, 그에 직결된 개정조례안의 심의·의결도 존속기한

만료가 예정된 해의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
- <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>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를 참고하여 예시 일정을 검토한다면 다음 페이지와 같음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기금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, 해당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후 기금을 잘 활용하여 경관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, 경관과 잘 어울리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옥외 광고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기대됨.

[절차]	[주체]	[일정 예시]	이번 안건
기금 존속 여부 검토	기금운용관 (소관부서)	2월	
기금 존속기한 연장 여부, 기한 심의	지방재정계획 심의위	3월	9월
개정조례안 제출	기금운용관 (소관부서)	6월	
심의위 의결 검토, 조례안 심의 · 의결	의회		10월
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	기금총괄관리관 (기획예산과)	8월 31일	8월
기금운용계획안 작성	기금운용관 (소관부서)	9월 10일	9월
기금운용계획안 심의	개별기금 운용심의위	-	9월
기금운용계획안 확정 및 제출	기금운용관 (소관부서)	10월	11월
심의위 의결 검토,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· 의결	의회		12월

※ 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 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70호, 일부개정 2025. 4. 1.]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5. 기금의 설치·운용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 20872호]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 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 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 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 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 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 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
2.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

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 20872호]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□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(2025. 10. 15.)

- 질 의 : 옥외광고발전기금 규모는 어떻게 되며, 주요 사용처는 무엇인가
- 답 변 : 매년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고 지출은 3억5천만원 정도임. 주로 간판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,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이 필요하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임
- 질 의 : 기금 존속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조례가 개정된 후,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가 있어야 함. 이번 조례 개정안 제출은 절차 상, 시기 상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.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철회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제안함
- 답 변 : 절차 미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게 대해 진심으로 죄송함. 다음 회기에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진행되는데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 이번 회기 개정될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바랍. 향후 기금운용 관련 절차 미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

7. 토론 요지

-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